

2024년 회계현안설명회 발표자료

2024년도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2024. 12. 20.



금 용 감 독 원
[회계감리2국]

목 차

I. 회계심사·감리 실시 통계	1
II. 2024년 회계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3
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I)	3
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II)	5
3.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7
4.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9
5.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11
6. 시설 및 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13
7.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15
8.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17

목 차

Ⅲ. 2024년 재무제표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	19
1.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19
2.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21
3.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22
4.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23

I. 회계심사·감리 실시 통계

1 회계감리(심사 포함) 유형별 실시 현황

가. 금융감독원

(단위 : 회사수)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
표 본	66	58	102	82	95	81	113	106	78	77
협 의	47	55	37	44	64	67	58	54	68	36
위 탁*2	18	20	1	-	-	-	-	-	-	-
합 계	131	133	140	126	159	148	171	160	146	113

*1 '24.11월말 기준

*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회사를 통보받아 감리한 건임(외감규정 제67조의 개정에 따라 '16.11.17.부터는 한공회 담당으로 변경)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연 도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심사·감리 회사수	367	583	476	609	385	245	209	323	268	95

* '24.11월말 기준(한공회 결산월은 3월)

2 위반유형별 적발건수*1

유형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2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135	85	55	66	114	116	109	82	81	78
1.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4	16	11	8	14	15	20	13	19	15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3	7	7	3	9	3	5	8	9	4
3.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관련	24	6	7	11	13	19	16	14	12	11
4. 고정자산 과대계상	5	7	2	5	8	7	9	2	5	8
5. 개발비 과대계상	-	3	2	11	11	4	5	1	2	2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3	5	9	6	17	18	7	9	3	11
7. 미지급비용, 차입금, 총당부채 등 부채 과소계상	23	11	8	6	9	16	16	10	9	11
8.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35	15	4	5	13	17	9	4	3	3
9.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22	6	3	3	2	6	13	12	11	3
10. 기타손익 과대(소) 계상	16	9	2	8	18	11	9	9	8	10
B. 자산.부채 과대 계상 등	8	16	10	15	17	13	25	15	13	16
1.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	4	6	7	7	9	9	10	7	7	10
2. 매출.매입 과대(소) 계상	4	10	3	8	8	4	15	8	6	6
C. 주식 미기재	26	41	30	27	32	27	42	15	20	16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9	28	11	15	24	21	24	9	14	12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14	12	12	9	8	3	4	1	1	0
3. 기타 주식 미기재	3	1	7	3	-	3	12	5	5	4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4	8	14	18	26	20	16	30	7	9
E. 외부감사방해 등 회계기준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4	30	15	4	2	15	9	1	1	10
합 계	177	180	124	130	191	191	201	143	122	129

*1 제재조치한 회사별로 2개 이상의 위반유형이 적발된 경우 중복 계산

*2 '23.11월말 기준

Ⅱ. 2024년 회계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으로 P제품(코로나 관련 특수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여 재고 물량이 과다하게 쌓이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존 거래업체에 P제품을 보낸 후 단순 분리하여 다시 들여왔음에도 마치 신규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P제품을 수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기존 주력 거래처(B사)와 공모하여 B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C사*)에 P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P-1, P-2)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

수출입대금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B사에 원재료 수입대금을 先 지급하고 동 자금을 넘겨받은 C사로부터 명목상 P제품의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하였다.

*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1%) 차감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및 재고수불부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수익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31에 따르면 재화를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9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해외 신규업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량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수출신고서류 및 입금 증빙만을 확인하였을 뿐 해외매출 선적서류 등을 통한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비교, 대금지급 조건 및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원활한 상장 심사 및 상장시 고평가를 받기 위해 매출 및 당기순이익 조작의 분식회계 유인이 항상 존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거래처와 공모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매출은 형식적인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대신, 사전 협의자료 등을 통해 거래 순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다른 증빙 서류와의 대사를 통해 보다 높은 증거력을 확보하는 등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II]

1. 회사의 회계처리

D사(이하 '회사')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을 제조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코넥스 상장법인이다. 회사는 코넥스 시장 상장 추진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비롯한 영업팀, 회계팀이 매출 조작방식을 협의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회사는 ¹⁾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²⁾수출신고서에 수출품의 단가와 수량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조작하고, ³⁾수익 인식조건(ex 검수조건부, FOB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을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서류를 조작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거나 수익 인식조건 충족 시점보다 빠른 세금계산서일, 수출신고수리일 등에 매출을 인식하는 등 실질과 다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회사는 동 가공매출 및 조기에 인식한 매출에 대한 채권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일 거래처의 다른 매출채권 회수액 또는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매출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거나,

채권채무조회서 발송을 위한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감사인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이메일주소를 만들어 일치한다는 회신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7 및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서류를 조작한 가공매출 및 조기 매출 인식에 대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30(감사문서) 문단 5, 6, 8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에 대해 감사문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통해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문서화해야한다.

감사인은 기말시점에 근접한 매출이 평월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여부, 검수완료여부 등 수익인식조건을 확인하는 기간귀속 테스트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수출신고수리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에 회사가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매출을 인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의 타당성 및 합리성과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코넥스상장 및 투자유치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변동이 식별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조회는 외부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감사인이 직접 입수하는 증거력이 높은 감사절차이므로 회사가 조회서 발송을 거부할 경우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1. 회사의 회계처리

E사(이하 '회사')는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x3년중 미국 소재 F사(이하 '종속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이전 대가와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차이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 회사는 x6년 종속회사와 제조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종속회사가 제조·판매하여 온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x6년 이후 종속회사의 매출 구성은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x9년중 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 후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의 청산을 결의(x9년)하였다.

회사는 x9년 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청산 결의되었을 뿐 아니라 x9년 4분기 이후로는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상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영업권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동 기준서 문단 12~14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징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징후를 인식하였음에도, 종속회사 제품 재고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감사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기업회계기준서상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4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G사(이하 '회사')는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경쟁력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등 재무상황이 어려워지자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판매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거나 재고자산으로 기록하였다.

즉, 회사는 x1년 이후 재고자산의 출고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는 과소, 재고자산은 과대 계상하여 왔으며 매월 별도로 '원가조정' 명목으로 차이금액을 순차적으로 해소하였다.

회사는 x4년중 자체적으로 전수 재고실사를 수행한 결과, 수년간 누적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실물 간 차이를 파악하였으나 일시에 매출원가로 조정하는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부당하게 대체하고, 미해소금액은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 매출 인식 시점에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가공의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간손익을 조작함으로써 당기 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6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계상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비용 인식을 부당하게 이연하기 위하여 인식한 가공의 자산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및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만약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를 식별하였다면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불일치사항이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보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회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신내역에 포함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추가 증빙 확인, 조회처에 재확인 등과 같은 필수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조회서의 회수사실에만 근거하여 회신결과를 '일치함'으로 간주하였고,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체목적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충분한 전문가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회사의 거짓설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하여 모든 조회처를 대상으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하기로 계획한 경우 단순히 회수 여부 뿐만 아니라 회신내역에 기재된 특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였다면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방식(감가상각)을 악용하여 비용인식을 이연할 목적으로 대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발생배경 및 관련 증빙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5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H사(이하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회사 前 재무팀 甲대리는 '15년 3월경부터 '22.2.15.까지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6.4월경, 甲대리는 도박 등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회사의 매입채무 등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甲대리에게 장기간 자금관리업무를 전달하게 하고, 甲대리에게 상급자의 승인 없이 임의의 대금 지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甲대리에게 상급자의 승인 없이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등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자금 및 회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자금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장기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횡령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외부조회), 7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이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외부조회요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 (문단 A1 참조)
- (b)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문단 A2 참조)
- (c)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으며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등 조회서의 설계 (문단 A3-A6 참조)
- (d) 조회처에 대한 조회요청서의 발송. 적용가능한 경우 후속확인조회서를 포함한다. (문단 A7 참조)

8.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해 감사증거를 구함 (문단 A8 참조)
- (b)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다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을 평가함 (문단 A9 참조)

② 감사인은 甲대리가 횡령하면서 매입채무가 지급된 것처럼 처리한 업체*를 2년째 매입채무 조회처로 선정하였으나

* 매입채무 잔액이 가장 큰 업체

甲대리가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였음에도 그 거부 사유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한 감사증거를 구하지 않고,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다른 감사절차에 대한 시사점도 평가하지 않았으며,

해당 직원의 상급자, 현업담당자와 면담 등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회처로 선정된 거래처에 조회서를 미발송하였음에도, 마치 발송하였으나 미회수된 것처럼 조서화하고 대체적 절차만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금·회계 부문의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감사인은 매입채무의 실재성·완전성 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 위험 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및 문서화하여야 한다.

6 시설 및 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I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수익성 관리를 재무담당이사에게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시설·기계장치 등의 제작업체와 원·부자재 매입, 외주가공 등을 의뢰하는 업체가 동일한 점을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유형자산으로 허위 계상 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요구자료도 위·변조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 외주의뢰 제작·가공 등의 비용을 임의로 시설·기계장치 등의 취득원가로 허위 계상하여 위반기간 동안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고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의 대규모 설비투자 등의 계획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신규 사업보고서 등을 입수하였으나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취득 내역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관련 증빙을 요청하면서도 회사의 기안서, 지출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만 확인하고, 거래상대방 확인, 전체 취득금액 등이 포함된 계약서 등 신뢰성 높은 감사증거의 수집이 아닌 회사 담당자의 구두 진술만을 신뢰하여 유형자산의 허위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 할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포착하면 이를 감사계획 수립에 고려해야하고, 취득 증빙에 대한 감사 절차 수행시 회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감사증거뿐 아니라 거래상대방 확인, 전체 취득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등 신뢰성 높은 감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에는 부정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7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J사(이하 '회사')는 정보통신장비 등의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x1년말 일부 임원으로 하여금 본인에 대한 퇴직금의 추가 계상을 포기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추후 일정 기간 동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 계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실제로 회사는 x1~x6년 재무제표상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확인서 제시 및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동 회계 처리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x7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미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증빙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회사는 지정감사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회사의 대주주(회장)라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결과, 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x7년 감사보고서상 비교표시되는 x6년 재무제표 작성시 x1년 이후 인식하지 않았던 충당부채를 일시에 인식하였고, 이후 x7~x9년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당사자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회사의 경제적 자원이 이전될 의무가 없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지정감사인의 권고를 따르는 외형을 이용하여 소급하여 일시에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의 문단 4.27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업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회사의 퇴직급여충부채 계상 관련 감사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감사증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상 대표이사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약정에 따른 부채나 자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서상 해당 자산과 부채가 기준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와 특수관계인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감사시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문서나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8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1. 회사의 회계처리

K사(이하 '회사')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개발을 영위하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싱가포르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위한 비영리법인 L사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L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회사는 L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회사는 L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의 공급 및 마케팅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는데, 이를 재무제표 주식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에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L사에 대한 특수관계 여부 및 기준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상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에 따르면 보고기업의 주요경영진 일원에 의해 지배(공동지배 포함)되는 기업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요경영진이 L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L사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관련 통제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으로 평가하였고, 이사회이사록을 형식적으로 검토한 결과회사의 대표 이사가 L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와 L사 사이에 발생한 특이매출 거래구조 및 거래처의 특수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토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를 누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Ⅲ.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주요 지적사례

1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1. 회사의 회계처리

M사(이하 '회사')는 x1년 N사(이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회사는 x4년중 종속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유효지분율이 감소(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 하였으나, 유상증자 대금 유입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후 x7년중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회사의 유효지분율이 변동(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자기주식 처분 대금 유입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분변동 차액이 재차 발생하였다.

회사는 상기 유상증자 미참여(x4년중) 및 종속회사의 자기주식 처분(x7년중) 등에 따른 지분변동 차액을 주주간 자본 거래로 판단하여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당기순이익이 아닌 지분법자본변동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투자성과가 아닌 개별기업의 투자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고, 투자자의 유효지분을 하락은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효지분 하락에 따른 투자차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를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문단BC10에 따르면,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순이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IASB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5에 따르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4. 시사점

회사는 종속회사의 지분 거래로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유효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별도재무제표가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분변동 차액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1. 회사의 회계처리

O사(이하 '회사')는 x1년중 관계회사인 P사(이하 '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x4년중 회사는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관계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전환사채의 전환 전 장부가액을 추가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추가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산정시 지급한 대가(본 사례에서는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서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008호(회계 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1에 따라 개념체계나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6.5(역사적원가)에 의하면 역사적 원가는 자산 취득 등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 자산을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③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6과 24등에 의하면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비현금대가를 지급한 경우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나 사건에 대해 경영진은 개념체계 및 다른 유사한 거래의 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Q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부품의 제조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 및 운전자지원시스템 등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다.

회사는 정부과제 및 고객 요구 사양에 따라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 동 결과물을 사용·판매하고 있어, 회사의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회사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개발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총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또한, 회사는 연구원별 실제 업무투입시간을 측정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각 제품군에 배분하여야 함에도 전체 인건비를 임의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각 제품군에 배분하여 자산화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제품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동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및 기술적·금전적 자원확보 요건 등은 충족하나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비용 처리가 불가피하였다.

회사는 개발비 자산화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을 개발비(자산)로 계상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7과 18 및 20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신뢰성 있는 측정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4. 시사점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4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1. 회사의 회계처리

R사(이하 '회사')는 x1~x3년 중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인 S사(이하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가격 등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찾지 못하여 수준3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인 이익접근법에 따라 공정가치를 주당 \$3로 산정하여 x5년중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이후 x5년말 전후 국내외 벤처펀드가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당 \$20의 가격으로 증자 및 주식 매매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사와 감사인은 x5년말 전후 해외법인 주식 거래는 ① 어느 시장에도 공시되는 가격이 아니고, ② 거래 당사자가 해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등으로 제한되는 등 활성시장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 가격인 주당 \$20를 공정가치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 x5년말 재무제표상 S사 주식을 계속 주당 \$3로 평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S사 주식 평가시 최근 거래가격인 주당 \$20이 아니라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주당 \$3로 평가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문단9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며,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문단4에 따르면 초기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x5년말 전후로 국내외 벤처펀드가 S사에 자금을 투자한 거래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조달 거래에 해당하는 관측 가능한 거래로서 공정가치 측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S사 주식을 주당 \$2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특정 거래가 공정가치 평가시 고려할 수 있는 정상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거래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 평가액과 차이가 크고, 거래가격이 시장에 공시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